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33,656,907	1.80%
자 체 수 입	1,309,120	1,385,629	1,470,962	1,563,563	1,663,982	7,393,256	6.20%
이 전 수 입	3,530,882	3,587,591	3,642,755	3,654,866	3,702,535	18,118,629	1.20%
지 방 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14,299	1,523,397	1,441,824	1,454,762	1,460,739	7,395,021	△0.90%
세 출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33,656,907	1.80%
경 상 지 출	1,896,915	1,937,186	1,946,842	1,990,479	2,004,217	9,775,639	1.40%
사 업 수 요	4,607,385	4,709,432	4,758,699	4,832,711	4,973,040	23,881,267	1.9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도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5	637,256
여성정책추진사업	39	472,97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1	156,61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7,674

-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강원도청 → 행정정보 → 예산 YBG → 세입세출예산서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7)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우리 도는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2011.7.29.)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도민 공모제도」 등이 있습니다.

- 아울러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우리도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350,000	78,135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17.5.17.~7.18.까지 실시한 '2018년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결과 '18년 당초예산에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은 78,135백만원입니다.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위원회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8,135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5,940	
일자리과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112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4,395	
여성청소년가족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222	
관광개발과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2,253	
관광개발과	역사문화창조사업	1,300	
관광개발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665	
관광개발과	탕방로 안내체계 구축	1,560	
관광개발과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2,716	
관광개발과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2,971	
관광개발과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985	
관광개발과	창극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	3,392	
관광개발과	오로라파크 조성	2,324	
관광개발과	소방 및 야외교통 4D 체험관 조성	2,031	
관광개발과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	2,653	
관광개발과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447	
관광개발과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조성	2,16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7)

4-4.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도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177	385	443	4,727,826	4,712,407	15,419
대변인	1	1	5	5	12,608	25,901	-13,293
감사관	1	1	6	1	452	410	42
총무행정관	1	2	5	9	110,744	88,207	22,537
기획조정실	1	16	27	27	869,488	805,677	63,811
재난안전실	1	5	14	7	68,294	78,968	-10,674
경제진흥국	1	15	28	38	195,004	147,853	47,152
글로벌투자통상국	1	9	14	22	57,184	53,726	3,459
문화관광체육국	1	9	15	31	214,789	209,775	5,014
보건복지여성국	1	18	26	41	1,618,538	1,390,819	227,719
농정국	1	11	27	40	266,931	260,370	6,561
녹색국	1	15	30	34	425,757	419,019	6,738
건설교통국	1	12	24	23	351,925	367,812	-15,886
올림픽운영국	1	8	13	15	30,772	362,782	-332,010
소방본부	1	21	65	63	344,705	354,201	-9,496
의회사무처	1	1	4	3	11,605	11,017	587
농업기술원	1	13	36	36	48,403	50,715	-2,312
환동해본부	1	10	21	22	59,875	64,049	-4,17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1	7	15	8	25,580	6,639	18,941
인재개발원	1	1	6	3	5,045	4,913	132
보건환경연구원	1	2	4	15	10,127	9,554	572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7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5.58	48.38	31.97	29.14	56.81	32.02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2018년도 일반회계 총계예산 세출 구조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산액	4,350,000	1,269,385	2,469,115	450,951	160,549
비중	100	29.2	56.8	10.4	3.7

- ▶ 일반회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산출내역

* 산출식 = $\frac{\text{인건비}(346,403\text{백만원})}{\text{지방세}(1,015,000\text{백만원}) + \text{세외수입}(66,689\text{백만원})} \times 100 = 32.02\%$	
* 인건비	= 보수 + 기타직 보수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46,403백만원 = 314,656백만원 + 11,673백만원 + 20,074백만원)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00	167	-
	부단체장		2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99	1,590	△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96	428.4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4.4	
	의원국외여비		143.2	
지방보조금		64,707	67,536	2,829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90천원(1인당)	1,174(1인당) * 6,471명 기준	△116
공무원 일·숙직비		60천원(1일·야당)	60천원(1일·야당)	-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아래 링크)을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2)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에 따른 산출·편성내역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산출내역	편성액 산출내역										
단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24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음)	167,200 × 1명 = 167,200										
부단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한도액 총액(924,261) 범위 내 편성	116,600 × 2명 = 233,2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0.1) <small>·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정책사업결산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추진을 위해 0.1 적용</small>	기초기준액(1,594,319) + {(정책사업 결산연동액(56,253) × 보정계수 0.1)} = 1,599,944 → (조정) 1,590,000										
지방의회 관련경비	아래 산정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총액 산정액 : 796,003										
의정운영 공통경비	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312,894) × (1+0.297) = 405,823 → (조정) 428,38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평균액</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의정운영 공통경비</td> <td>312,894</td> <td>317,188</td> <td>304,305</td> <td>317,188</td> </tr> </tbody> </table>	구분	평균액	2015년	2016년	2017년	의정운영 공통경비	312,894	317,188	304,305	317,188
구분	평균액	2015년	2016년	2017년								
의정운영 공통경비	312,894	317,188	304,305	317,188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②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 × (1+0.17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210,000) × (1+0.176) = 246,960 → (조정) 224,44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평균액</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의회운영 업무추진비</td> <td>210,000</td> <td>210,000</td> <td>210,000</td> <td>210,000</td> </tr> </tbody> </table>	구분	평균액	2015년	2016년	2017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10,000	210,000	210,000	210,000
구분	평균액	2015년	2016년	2017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10,000	210,000	210,000	210,000								
의원국외여비	③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143,22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평균액</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th> </tr> </thead> <tbody> <tr> <td>의원국외여비</td> <td>136,400</td> <td>136,400</td> <td>136,400</td> <td>136,400</td> </tr> </tbody> </table>	구분	평균액	2015년	2016년	2017년	의원국외여비	136,400	136,400	136,400	136,400
구분	평균액	2015년	2016년	2017년								
의원국외여비	136,400	136,400	136,400	136,400								
지방보조금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64,494,427) × (1+0.0033(전년도당초예산대비 전체예산 증가율)) = 64,707,259	편성액 : 67,535,811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시책·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나 상임위원회 명의를 의정활동 수행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경비입니다.
- ☞ 지방보조금은 민간보조금 한도제 운영(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대상이 되는 6개 통계목에 대한 예산액(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 제외)입니다.
 - ▶ 대상 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 기준액은 '18년 최종예산까지 적용되며 초과편성 시 보통교부세 감액대상이 됩니다.
 - ※ 민간보조사업 중 올림픽 등 국제행사 및 일자리 연계사업 등은 민간보조금 한도액 제외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조정·협약하여 한도액 준수 예정입니다.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건강검진, 상해·생명보험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3년도에 1인당 예산편성 기준액이 처음 적용됨에 따라 전년도 편성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